



최신 관세 동향 및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

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



I. 최신 관세 동향

1. 2023 관세행정 운용방향
2. ACVA 신청 및 처리 현황
3. 최신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현황

I. 최신 관세 동향

1. 2023 관세행정 운용 방향

구 분	운용 방향
심사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관세조사 등을 통한 탈세행위 엄정 대응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하여 신속적 운영- 무역 전반의 리스크 종합 관리를 위해 연차별로 특정 산업 분야 집중 점검• 통관적법성 관점에서 관세조사 운영 다양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세액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관련 수출입요건(허가·승인·추천 등) 점검 확대- 관세조사 방식(정기/비정기)을 다시 정립하고 비정기 조사 활성화
조사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체계 구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술유출 수사 대상을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·제품으로 확대- 국제적 규제를 회피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 집중 단속• 불공정 무역 행위 중점 단속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관세포탈 사범 단속 강화(FTA·할당·양허세율 부당 적용)-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지속적 단속
외환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합법적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 범죄 중점 단속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수출입 실적 조작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단속 강화- 법인재산 불법유출·자금세탁, 사주 일가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• 가상자산 등 신종 외환범죄 예방·단속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신종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지속적 단속- 가상자산 구매대금 송금 및 자금세탁 행위 등 특수 무역거래를 악용한 외환범죄 중점 점검

1. 최신 관세 동향

2. ACVA 신청 및 처리 현황

연도	신청	결정	철회·반려
2007	3	-	-
2008	1	-	-
2009	-	2	-
2010	5	3	1
2011	5	-	1
2012	3	4	-
2013	4	3	1
2014	8	5	-
2015	15	4	3
2016	9	6	7
2017	24	6	-
2018	25	15	1
2019	28	14	5
2020	21	31	5
2021	31	22	5
2022	21	17	3
합계	203	132	32

❖ ACVA 신청 건수 급증

- 2017년 이후 ACVA 신속 처리를 위한 담당부서 확대 개편 및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 관점의 Risk 관리 인식 증가
-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ACVA 시행이후 16년 간 신청건수의 약 60% 차지

1. 최신 관세 동향

3. 최신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현황

협정	발효 일자	주요 내용 및 효익
한-이스라엘 FTA	2022.12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이스라엘의 최초 아시아국가 FTA로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달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전체 품목 중 94.2% (우리나라) 및 95% (이스라엘)의 관세를 철폐- 중국,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 기대- 對이스라엘 수출액 비중이 큰 자동차, 합성수지, 첨단분야 등의 관세 철폐
한-캄보디아 FTA	2022.12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시장접근성 상승 및 수출 활력 기여 기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전체 품목 중 95.6% (우리나라) 및 93.8% (캄보디아)의 관세를 철폐- 승용차,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철폐에 따른 관련 품목 수출 증대 예상- 양국간 의류·섬유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 및 상호 교역 증대 기대
한-인도네시아 CEPA	2023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한-아세안 FTA 상 미개방 품목의 수출여건 개선 기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존 한-아세안 FTA 상 인도네시아의 자유화품목은 80.1% 수준- 수입품목 중 95.5% (우리나라) 및 93% (인도네시아)의 관세를 철폐- 철강제품, 기계·자동차부품, 정밀화학제품, 섬유제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철폐

<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> 미국, EU, EFTA, 아세안 10개국, 중미 5개국 등 59개국 21건

<FTA 활용 시 유의사항> 원산지 증명서의 적정 발급, 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 등

II.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

1.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
2.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
3.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
4. 환급신청 기간 연장 및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
5.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 변경

II.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

1.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(부가세법 §35②)

현 행	개 정
<p>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세관장의 결정·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● 세관장이 결정·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·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,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	<p>□ 발급사유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좌 동) ● 세관장이 결정·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·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관세법」에 따라 벌칙*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**으로 당초에 과소 신고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세포탈죄, 가격조작죄 등 ** 허위문서 작성, 자료파기 등 -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

<개정이유>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수정신고 하거나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II.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

2.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(부가령 §72)

현 행	개 정
<p><신 설></p>	<p>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 구체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세조사*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관세법」 및 「FTA관세법」에 따른 심사/조사 ●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정신청, 수정신고 등 ●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●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
<개정이유>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수정신고 하거나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(2월 말 시행 예정)

II.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

3.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(관세법 §37의4, §277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 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시정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과세자료 미제출 · 거짓제출 	<input type="checkbox"/> 시정요구 대상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 · 거짓제출
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과세자료 미제출 · 거짓제출 : 1억원 이하 ● 시정요구 미이행 : 2억원 이하 	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 대상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 · 거짓제출 : 1억원 이하 ● (좌 동)

<개정이유> 성실한 납세신고 유도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구 분부터 적용

II.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

4. 환급신청 기간 연장(환특법 §14①) 및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(환특법 §21④, 환특령 §30 등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급신청 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<input type="checkbox"/>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금지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세전통지한 경우 - 관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- 관세법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가산금 산정기간 단축으로 과다환급가산금 납부세액 감소

<개정이유> 납세자의 권리 보호

<적용시기>

- 환급신청 기간 연장 : '23.1.1.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
-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: '23.4.1.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

II.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

5.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 변경(고시 §45, §46 및 훈령 §2, §5)

현 행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상담 및 심사 접수·배부 주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전심사 : 본부세관장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 ● 사전상담 : 본부세관장에게 신청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본부세관 및 배부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본부세관 : 인천, 서울, 부산, 대구 및 광주세관 ● 심사 배부 기준 : 훈령 제5조 상 규정된 순서에 따라 본부세관 배부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접수·배부 주체 일원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전심사 :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 ● 사전상담 :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본부세관 및 배부 기준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전심사 본부세관 : 인천, 서울, 부산세관 ● 심사 배부 기준 : (원칙) 신청인 소재 본사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(예외) 세관 별 업무량 고려하여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

<개정이유>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

<적용시기>

- 접수·배부 주체 일원화 : '23.2.1. 시행
-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 및 배부 기준 변경 : '23.2.17. 시행